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6. 2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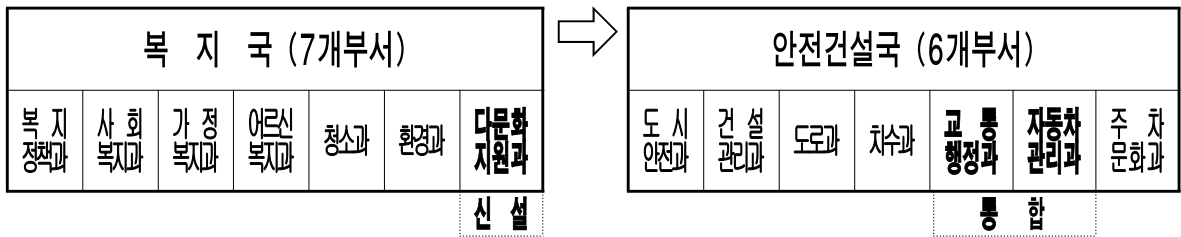
- 찾아가는 복지·맞춤형 복지 실시로 사람 중심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외국인을 총괄 지원할 부서 신설로 행정 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 전담 부서인 '다문화지원과' 신설
-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를 '교통행정과' 로 통합
- 동 업무에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 관리 기능'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국에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고, 안전건설국의 자동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로 통합하며, 동주민센터 직무에 저소득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업무를 추가하였음.



- 서울시 통계자료¹⁾ (2015.1.1.기준)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6,952명으로 서울시 거주외국인(457,806명)의 14.6%를 차지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²⁾도 10,861명으로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74,629명)의 14.5%를 차지하여 자치구 중 최고의 거주비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문화지원과’ 신설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불임)
-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의 통합은 전체 행정기구 증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2012.12.27.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자동차등록업무, 번호판 영치업무, 교통사법경찰 업무 등을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로 분장하였는데, 3년 6개월여 만에 원래대로 환원하는 불가피한 행정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서울 통계포털 (<http://stat.seoul.go.kr>)

2)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부서 신설 또는 폐지 등의 조직 개편 시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업무성과를 분석하는 등 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명)

연번	자치구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비고
총계		457,806	74,629	
1	종로구	12,711	1,288	
2	중구	12,669	1,321	
3	용산구	20,512	1,998	
4	성동구	13,382	2,174	
5	광진구	22,697	3,146	
6	동대문구	18,795	2,740	
7	중랑구	8,924	2,419	
8	성북구	13,747	2,015	
9	강북구	6,743	1,901	
10	도봉구	4,396	1,332	
11	노원구	6,660	1,670	
12	은평구	9,284	2,494	
13	서대문구	14,445	1,563	
14	마포구	16,022	1,981	
15	양천구	9,772	2,468	
16	강서구	13,183	3,446	
17	구로구	53,191	8,602	
18	금천구	32,974	5,438	
19	영등포구	66,952	10,861	
20	동작구	19,664	2,858	
21	관악구	32,996	5,544	
22	서초구	10,667	1,085	
23	강남구	12,915	1,387	
24	송파구	14,838	2,725	
25	강동구	9,667	2,173	

※ 출처 : 서울통계포털(2015. 1. 1.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39 호
----------	---------

제출연월일 : 2016.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찾아가는 복지 · 맞춤형 복지 실시로 사람 중심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 외국인을 총괄 지원할 부서 신설로 행정 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 · 외국인 지원 전담 부서인 '다문화지원과'를 복지국에 신설

나.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를 '교통행정과'로 통합

다. 팀 재배치에 따른 국간 업무 이관

○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 : 행정국에서 복지국으로 이관

라. 동 업무에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 관리 기능'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사항

(1) 규제 사전 검토 : 대상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기타 사항

(1) 입법예고(2016.5.12.~6.1, 20일간)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부서 검토 의견 반영 : 추가 검토사항 반영

○ 부칙 중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추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주차문화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과”를 “환경과, 다문화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은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주차문화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행정국) ① (생략)</p> <p>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략)</p> <p>10. <u>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u></p> <p>11. ~ 23. (생략)</p> <p>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청소과, <u>환경과</u>를 둔다.</p> <p>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5. (생략)</p> <p><신설></p> <p>제9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u>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거문화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제13조(직무) ①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제5조(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9.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1. ~ 23. (현행과 같음)</p> <p>제7조(복지국) ① ----- ----- -----<u>환경과, 다문화지원과</u>-----.</p> <p>② -----.</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u>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u></p> <p>제9조(안전건설국) ① ----- ----- <u>교통행정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동은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u></p>